

July, 1994)

벨로주교

여기서 언급된 유엔사무국장에게 쓴 편지는 1989년 2월에 쓰였다. 그 편지에서 벨로주교는 유엔사무국장에게 동티모르인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동티모르 국민투표를 실시 하자고 요청했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인들이 합병을 선택했다고 주장하지만, 주교는 "동티모르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죽어가고 있다.

벨로주교는 동티모르에 평화를 다시 정착시키기위한 공개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현재까지 되풀이 제기해왔다. 그때 이후 사건들이 그가 옳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에 자국민의 유입을 이용하고, 티모르 인구를 소수로 줄이기위해 티모르인들의 출생률을 조절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달간 반(反)인도네시아 소요들을 포함해 이 정책이 야기시키고 있는 사회적 혼란은 오히려 주교의 이러한 주장을 강조해 주고 있다.

1989년 동티모르가 부분적으로 개방된 이래 몇년간, 벨로주교는 다른 일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 일은 정부기관들이나 언론을 방문하기전에 독립을 위해 시위를 한 젊은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벨로주교는 직접적으로 바티칸의 관할아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그의 집 - 티모르 젊은이들이 목숨이 위협할 때마다 피난처로 삼은 그곳을 급습하는 것을 회피한다. 전형적으로 주교는 자신의 차로 그들을 동반하고 그래서 그들이 인도네시아 군대에 의해 최포되지 않도록 했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에 병원이나 학교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인들은 교회 기구들을 찾아왔다. 아무리 초라하고 그들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것은 교회였기 때문에 수녀들과 성직자들은 고아원, 학교들, 치과들을 운영했고 벨로주교 또한 교회가 떠맡고 있는 이 광대한 사회적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침묵속에서 고통받아야만 하는 동티모르의 "작은 민족", 독립을 위해 공개적으로 투쟁하는 게릴라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점령에 협조하고있는 동티모르인들- 이 모든 사회 각층의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 벨로주교를 지켜본다. 최근의 인터뷰에서 티모르고위공직자는 티모르인들에게 벨로주교가 갖는 의미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벨로주교는 자유의 상징이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어느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그는 우리에게 왔다. 그는 주교로서 갖는 면책권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용했다. 그와 성직자들은 동티모르 문제의 해결에 도달하는 데 가장 중요한(essential) 사람들이다." (Publico, 7 December 1994)

벨로 주교

카를로스 펠립 지메네스 벨로는 1983년 5월 동티모르의 천주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그의 직위는 딜리주교관구의 사도행정책임자이다) 그는 1988년 6월 주교로 임명되었다. 전 수장(首長)인 몬시뇰 마르티노 코스타 다 로페스는 인도네시아 군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공개적인 발언때문에 사임하도록 압력을 받았고 동티모르를 떠나야했다. 벨로는 인도네시아 침략시기동안 해외에서 사제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분명히 벨로를 다루기 쉬울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드러났듯이, 동티모르에서 직위를 맡은 후 벨로주교 역시 모든 육체적 정신적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1989년까지 동티모르는 완전히 외부세계와 연락이 차단되었다. 그동안 벨로주교는 인도네시아 점령지인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적은 편지를 물레 국외로 반출했다. 1984년 2월, 그의 전임자, 몬시뇰 로페즈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가장 나쁜 사회적 정치적 조건들 속에 있습니다. 8월8일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은 관청들에서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 딜리에서만 600명의 사람들을 — 그리고 그들은 지금 군사법정에 고소되어 있고 동티모르의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인구는 감소되고 있습니다. — 군대의 조정과 개입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일단 시위가 일어나는 지역에 다시한번 민간인구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대대, 헬리콥터 탱크 그리고 폭탄 비행기들을 가지고서도 그들이 여전히 사람들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단도와 칼로 무장한 채 사람들이 그들의 능장과 눈발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몬시뇰, 적십자는 감옥에 접근하지 못 하고 저 역시 코마르카 감옥의 정치적 수감인들을 위한 미사를 집전할 수 없습니다. 무아페티니와 리모르에서는 공개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게릴라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사람들앞에서 살해되고 칼로 찢리고 살이 저며지고 막대로 맞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가족의 손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있는 섬뜩한 상황입니다. — 저는 자유로운 세계에 인도네시아가 저지르고있는 만행에 눈을 뜨라고 호소합니다. 교회는 고소당하고 있고 우리의 학교는 수색당하고 학생들은 조사당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몬시뇰, 저는 이 편지가 당신의 손에 닿기를 바랄 뿐입니다.”

1) 벨로주교는 그의 일 속에서 동티모르인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민족자결권을 존중하여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동티모르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분명히 인식했다. 1984년 12월 그는 말한 바 있다.

“우리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티모르 분쟁의 유일한 해결책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것임을, 그리고 이것은 민족자결권의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고 계속해서 널리 알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벨로주교의 생각이다. 그는 동티모르에 대한 압력을 느낀다. (New Statesman and Society, 15)

중요한(essential) 사람이다. (p.110, 7 December 1984)

1985년 7월, 신부들 중 한 명이 인도네시아 군인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후, 주교는 모든 성직자들과 교구민들에게 팡카실라라고 불리는 국가 이데올로기 의무교육과 코스(이 코스는 정부에서 운영한다.)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주교는 "위의 강의참석에 대한 거부는 우리 성직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동물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에 대한 강한 저항의 표시이다."라고 말했다.

티모르인 전부에게 강요된 '인도네시아화(Indonesianisation)'의 중간에서 티모르 전체에 걸쳐 그나마 자체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천주교회가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피난처를 그곳에서 찾기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다.

고회는 사람들과 그들의 고통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 안아야만 했다. 벨로주교는 그의 목숨을 노리는 시도도 두번이나 있었다고 말했다.

"첫번째 암살시도는 1989년에 있었다. 나는 유엔의 사무국장에게 편지를 썼었다. 그 후 곧이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매복했으나 나는 피했다. 1991년 내가 1983년에 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비극에 근처 장소에 갔을 때 그들은 다시 시도했다. 그들이 다시 시도했던 때는 내가 집단살해의 증거인 묘지들을 보고난 직후였다. 그러나 나는 탈출했고 그들은 성공하지 못 했다. 그렇다. 늘 나에게 대한 압력을 느낀다."(New Statesman and Society, 15

7 December 1994)

인도네시아의 지배에 점령당한 땅에서 이에 순종하지 않는 세력은 응서되지 않는다.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받는다. 교회 역시 따라야만 한다. 그러나 때때로 벨로주교는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지키기 위한 시도로 비폭력적인 불복종운동을 일으켜왔다.

1986년 7월, 신부들 중 한 명이 인도네시아 군인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후, 주교는 모든 성직자들과 교구민들에게 팡카실라라고 불리는 국가 이데올로기 의무교육과 코스(이 코스는 정부에서 운영한다.)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July, 1994)

여기서 언급된 유엔사무국장에게 쓴 편지는 1989년 2월에 쓰였다. 그 편지에서 벨로주교는 유엔사무국장에게 동티모르인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동티모르 국민투표를 실시 하자고 요청했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인들이 합병을 선택했다고 주장하지만, 주교는 "동티모르인들은 결코 그들 스스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우리는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죽어가고있다.

벨로주교는 동티모르에 평화를 다시 정착시키기위한 공개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현재까지 되풀이 제기해왔다. 그때 이후 사건들이 그가 옳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에 자국민의 유입을 이용하고, 티모르 인구를 소수로 줄이기위해 티모르인들의 출생률을 조절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달간 반(反)인도네시아 소요들을 포함해 이 정책이 야기시키고 있는 사회적 혼란은 오히려 주교의 이러한 주장을 강조해 주고 있다.

1989년 동티모르가 부분적으로 개방된 이래 몇년간, 벨로주교는 다른 일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 일은 정부고관들이나 언론을 방문하기전에 독립을 위해 시위를 한 젊은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벨로주교는 직접적으로 바티칸의 관할아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그의 집 - 티모르 젊은이들이 목숨이 위협할 때마다 피난처로 삼은 그곳을 급습하는 것을 회피한다. 전형적으로 주교는 자신의 차로 그들을 동반하고 그래서 그들이 인도네시아 군대에 의해 체포되지 않도록 했다.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에 병원이나 학교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인들은 교회 기구들을 찾아왔다. 아무리 초라하고 그들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것은 교회였기 때문에 수녀들과 성직자들은 고아원, 학교들, 치과들을 운영했고 벨로주교 또한 교회가 떠맡고 있는 이 광대한 사회적 업무를 책임지고있다.

침묵속에서 고통받아야만 하는 동티모르의 "작은 민족", 독립을 위해 공개적으로 투쟁하는 게릴라들과 젊은이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점령에 협조하고있는 동티모르인들- 이 모든 사회 각층의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 벨로주교를 지켜본다. 최근의 인터뷰에서 티모르고위 공직자는 티모르인들에게 벨로주교가 갖는 의미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 "벨로주교는 자유의 상징이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어느 누군가를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그는 우리에게 왔다. 그는 주교로서 갖는 면책권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용했다. 그와 성직자들은 동티모르 문제의 해결에 도달하는 데 가장 중요한(essential) 사람들이다." (Publico, 7 December 1994)

인권협 재정 보고(94.7.5-94.12.31)

<지출내역>

7/17	인권협 안내전단	14,000
7/18	워크샵 자료 운반비(HB In a Korea)	3,000
	<수입>	
	네스티간 한국인권상황보고서 복사비(30권)	26,100
	정월특수복사비(7일)	10,000
7/5	이월	2,507,190
7/19	가입비(교회협인권위)	100,000
7/19	7월회비(교회협인권위)	50,000
8/2	가입비(불교인권위)	300,000
8/2	가입비(민변)	300,000
8/2	7월회비(민변)	50,000
8/4	가입비(천주교인권위)	300,000
8/4	7월회비(천주교인권위)	50,000
8/5	가입비(인권운동사랑방)	300,000
8/5	7월회비(인권운동사랑방)	50,000
8/9	가입비(유가협)	150,000
9/6	가입비(민가협)	300,000
9/6	7월회비(민가협)	50,000
9/7	8, 9월회비(천주교인권위)	100,000
9/14	가입비(교회협인권위)	100,000
9/14	8월회비(교회협인권위)	50,000
9/25	결산이자	16,944
9/25	8, 9월 회비(민가협)	100,000
10/5	8, 9월회비(민변)	100,000
10/25	10월 회비(민가협)	50,000
11/3	가입비(교회협인권위)	100,000
11/3	9월회비(교회협인권위)	50,000
11/4	10, 11월 회비(천주교인권위)	100,000
11/18	10, 11월 회비(민변)	100,000
11/18	11월 회비(민가협)	50,000
12/12	12월 회비(천주교인권위)	50,000
12/20	12월 회비(민변)	50,000
12/20	12월 회비(민가협)	50,000
12/20	8, 9월회비(사랑방)	100,000
12/25	결산이자	56,946

5,731,080

인권협 계좌번호

계입은행 159-20-052614 남규선

인권협은 1994년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개월간 운영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권협은 회원 가입, 정기회비, 후원회비 등을 통해 총 5,731,080원의 재정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권협은 회원 가입을 통해 1,2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기회비와 후원회비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여 인권협회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권협은 1994년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개월간 운영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권협은 회원 가입, 정기회비, 후원회비 등을 통해 총 5,731,080원의 재정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권협은 회원 가입을 통해 1,2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기회비와 후원회비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여 인권협회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권협은 1994년 7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개월간 운영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권협은 회원 가입, 정기회비, 후원회비 등을 통해 총 5,731,080원의 재정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권협은 회원 가입을 통해 1,2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기회비와 후원회비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여 인권협회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인권협(essential) 사립입니다. (Republic of Korea, 7 December 1994)

<일수>

Table with multiple columns containing financial data, possibly dates and amounts, with some text in Korean like '인문협', '재정', '보고서'.

800,137,2

<지출내역>

Table listing expenditures with columns for date, description, and amount. Includes items like '인권협 안내전단' (14,000), '워크샵 자료 운반비' (3,000), '엠크스티간 한국인권상황보고서 복사비' (26,100), and a total of 980,816.

<94.12.31 현재 잔액>

5,731,080 - 980,816 = 4,750,264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민원	30	0	0	0	0	0	60
사무연하 인원외
민주병면
민기형	30	0	0	0	0	0	60
봉고인원외	30	30
인원외 사안	30	0	0	0	.	.	45
유기형	15	15
차근고인원외	30	0	0	0	0	0	60
ANCC 인원외	30	0	0	0	.	.	45

944/12/31 현재 기입비 + 원 회비 315 만원

인원외 기입비 내부 차액
 $540 - 315 = 225$ (014)
 $30 \times 9 = 270$
 $115 \times 6 = 210$

35.

《 公 務 費 金 》

1512	회계연도 예산외	14,000
1518	산하청 직원(예산외) (예산외)	3,000
1519	회계연도 예산외(30일)	32,100
1528	회계연도 예산외(2월)	10,000
921	차입금	1,400
922	차입금(공공기관)	9,800
923	차입금(민간)	2,800
924	차입금(기타)	200,000
925	차입금(부채)	100
926	차입금(기타)	53,000
927	회계연도 예산외(8월)	10,000
928	회계연도 예산외(9월)	39,310
929	회계연도 예산외(10월)	32,000
930	회계연도 예산외(11월)	10,000
931	회계연도 예산외(12월)	50,000
1010	차입금(예산외)	10,000
1011	회계연도 예산외(10월)	10,000
1012	회계연도 예산외(11월)	10,000
1013	회계연도 예산외(12월)	30,000
1513	회계연도 예산외(13월)	309,818
1514	회계연도 예산외(14월)	10,000
합계		880,818

2'231'080 - 880'818 = 4'250'264
 04'15'31 회계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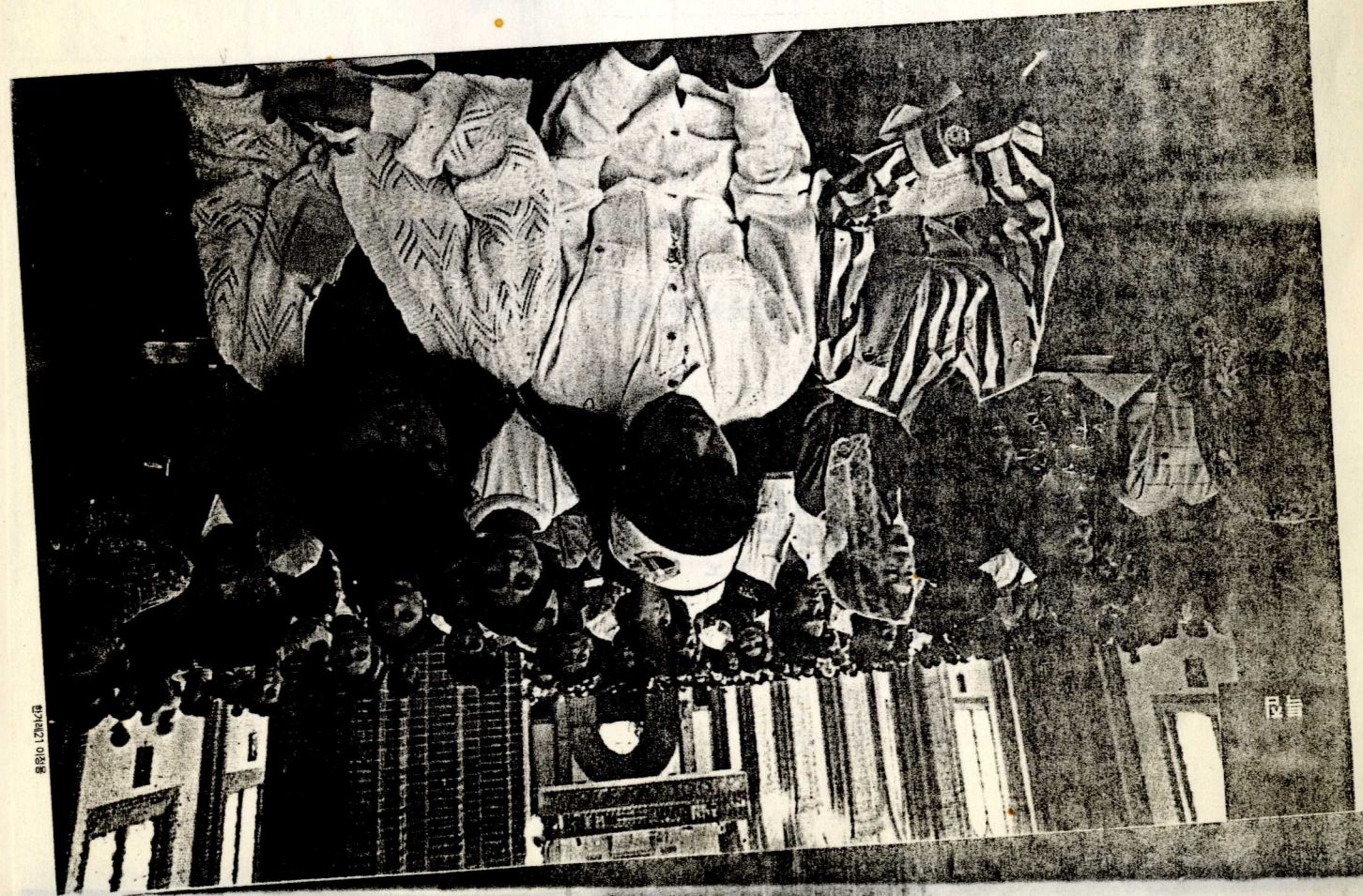
회계연도 예산외
 123-50-025814 甲字外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작업장 안전 시설을 구비하는 것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상용직이던 연수생으로 전환된 것은 이차 산업의 구조 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대표하여 노사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자금 계획상의 연수생 전환을 반대하고 해외의 인력 수입을 장려한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자금 계획상의 연수생 전환을 반대하고 해외의 인력 수입을 장려한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자금 계획상의 연수생 전환을 반대하고 해외의 인력 수입을 장려한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작업장 안전 시설을 구비하는 것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상용직이던 연수생으로 전환된 것은 이차 산업의 구조 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대표하여 노사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자금 계획상의 연수생 전환을 반대하고 해외의 인력 수입을 장려한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자금 계획상의 연수생 전환을 반대하고 해외의 인력 수입을 장려한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외국인노동자 정책 개선안, 인권법 제정

노동법 개정



연수생 4명 중 1명은 불법체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연수생 제도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법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작업장 안전 시설을 구비하는 것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상용직이던 연수생으로 전환된 것은 이차 산업의 구조 조정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대표하여 노사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투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자금 계획상의 연수생 전환을 반대하고 해외의 인력 수입을 장려한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자금 계획상의 연수생 전환을 반대하고 해외의 인력 수입을 장려한다는 의도는 분명하다.



2. 인권법의 진보와 95년 집중사업 계획

3. 한국 인권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국제화 시대, 한국 인권운동의 양상
인권운동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희망이 있는 집단인가
한국 인권현실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 합의 > 이제 우리의 인권문제 현안이 무엇인데 우리는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어떻게(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며 어떠한 목표를 세운다.

- < 토론을 위한 메모 >
1. 인권현안 중 가장 중요한, 가장 집중해야 할 문제(과제)는 무엇이고 이 과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가?
< 예 >
1> 법제도 개선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안기부법, 한미행정협정.....
2> 국가보안법과 양심수(장기수)
3> 과거청산(IMFINITY문제) - 장기수, 고문법치, 의문사, 12.12, 광주문제, 학살사건.....
4> 노동자(외국인 노동자), 도시빈민(천거), 아동, 교육 문제 등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방안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
- 95년 정치정세(남북관계, 국내정치상황, 국제동향, 동등)의 생김
- 일반국민정서
- 정치적, 실제적 효과

- < 사업 >
1. 법제도 개선운동
-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국가보안법 국제철폐연) 7, 8월
 2. 과거청산(impunity 문제)
- 광주문제 진상규명과 책임사 처벌을 위한 '어른의 재판(열린 법정) 개최 4월말-5월초
-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12.12/5.18/고문/장기수/의문사)부착용 특별입법(형소법 개정) 캠페인
 3. 인권단체는 올 한해 어떤 목표를 갖고 일을 할 것인가.(95년에 인권단체가 꼭 생취해야 할 인권개선의 목표는)
- 정부에 어떤 인권개선을 요구할 것인가.(인권단체가 제시해야 할 인권최저 기준은)

- 예상 참가자 명단
1. 민변(박두우, 전정배, 김은영...이324)
 2. 민주법연(김한규...)
 3. 전국연합 인권위(고상만, 이324, 서준)
 4. 민가협(남규선, 손민아, 재은아, 송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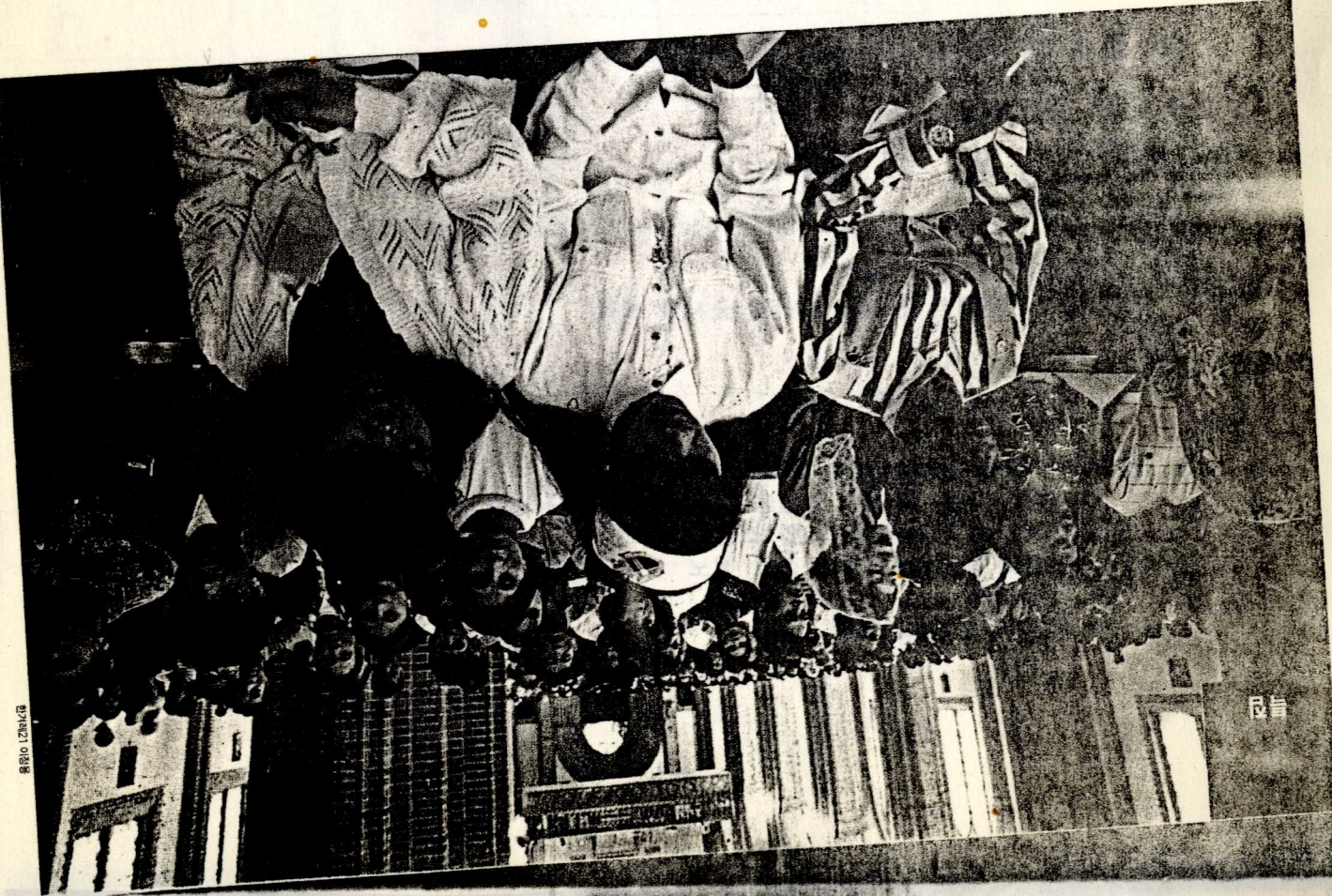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수생의 자력으로 해독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시점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연수생 4명 중 1명은 불법체류
연수생 4명 중 1명은 불법체류
연수생 4명 중 1명은 불법체류

연수생 4명 중 1명은 불법체류
연수생 4명 중 1명은 불법체류
연수생 4명 중 1명은 불법체류



연수생 4명 중 1명 불법체류



2. 인권협의 진보와 95년 집중사업 계획
3. 한국 인권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국제화 시대, 한국 인권운동의 양상
인권운동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희망이 있는 집단인가
한국 인권현실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 합의 > 이제 우리의 인권문제 현안이 무엇인데 우리는 이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어떻게(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며 어떠한 목표를 세운다.

< 토론을 위한 메모 >
1. 인권현안 중 가장 중요한, 가장 집중해야 할 문제(과제)는 무엇이고 이 과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 예 >
1> 법제도 개선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안기부법, 한미행정협정.....
2> 국가보안법과 양심수(장기수)
3> 과거청산(INFINITY문제) - 장기수, 고문법치, 의문사, 12.12, 광주문제, 학살사건.....
4> 노동자(외국인 노동자), 도시빈민(헝거), 아동, 교육 문제 등 사회적, 문화적 권리

< 방안 마련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
- 95년 정치정세(남북관계, 국내정치상황, 국제동향, 동등)의 생김
- 인민국민정서
- 정치적, 실제적 효과

< 사업 >
1. 법제도 개선운동
-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움(국가보안법 국제철폐연) 7, 8월
2. 과거청산(impunity 문제)
- 광주문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어른의 재판(일린 법정) 개최 4월말-5월초
-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12.12/5.18/고문/장기수/의문사)부착용 특별입법(형소법 개정) 캠페인

3. 인권단체는 올 한해 어떤 목표를 갖고 일을 할 것인가. (95년에 인권단체가 꼭 성취해야 할 인권개선의 목표는)
- 정부에 어떤 인권개선을 요구할 것인가. (인권단체가 제시해야 할 인권최저 기준은)

예상 참가자 명단
1. 민변(박두우, 전정배, 김은영...이석재)
2. 민주법연(김한규...)
3. 전국연합 인권위(고상만, 이석우, 서준)
4. 민가협(남규선, 손민아, 채은아, 송소연...)

○ 특집: 동아시아, 근대와 탈근대의 과제

중국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동아시아적 상황과 관련하여

백영서

1. 머리말

동·서양이라는 두 세계의 문화적 거리를 메우는 일이 도대체 가능한 것일까. 1991년 1월 미국의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중국 여성문제를 다룬 학술회의장에서 본 장면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로 필자에게 떠오른다. 미국인 여성학자가 중국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국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의 '잔인한' 사례들을 소개하자, 방청석에 있던 중국대표 중 한 여성은 그것이 국외자의 피상적인 견해라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산아제한을 위한 여러 조치야말로 중국여성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통역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논란은 언어소통의 어려움만큼이나 그 평행선을 좁히기가 쉽지 않았다. 처음에 필자는 그런 갈등이 주로 정치체제나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차 그 밑바닥에는 문화적 차이가 깔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정치체제와 문화가 서로를 필요로 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울분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상의 최대국대우 연장

중국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33

시기를 뜻한다. 그리고 중국과 벌인 인권논쟁과 그에 대한 아시아지역 여러 나라의 보도면에서 더욱 굳어졌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싱가포르의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한 미국 청년(Michael Fay)이 수십 대의 차에 페인트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는 범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벌금과 더불어 6대의 곤장(笞刑)을 맞도록 선고, 확정하였는데 그 벌이 집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미국 등 여러 나라가 보여준 대응방식의 차이도 같은 시각에서 파악될 수 있다.¹⁾ 이것은 이 '페이 사건'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사설 제목 [미국적 가치를 강조할 때]²⁾가 응변하는 바 동서간의 가치관·문화관의 차이로만 환인될 수 없는, 근대사에 대한 체험 그 자체에 '깊인한' 심각한 '쟁점'이 아닐 수 없다. 인권문제는 한층 깊이있는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려 할 때 출발부터 부딪치는 난점은 인권 개념의 모호함이다. 인권운동가들에게 일차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권리의 억압을 제거하는 실질적이고 절박한 과제가 자명한 인권 개념으로 부각되었지만, 그것이 서구인들의 경험에서 연유된 편협한 관점이란 지적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인권 개념은 '좋은' 정부 조건의 하나인 간소한 삶의 질 같은 추상적 주제와 연결되기 마련이고 그러다보니 논외의 당사자간에 문화적·제도적 차이를 이유로 견해가 엇갈려,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란으로 귀결되고 만다. 따라서 인권운동가의 실질적 과제만을 부각시키는 것으로는 인권 개념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않고 그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결합될 필요가 절실하다.³⁾

인권문제에서도 보편성과 특수성이란 낯은 논쟁을 넘어서는 것이 긴요함은 지난 여름 우리 언론에서 벌어진 북한의 인권문제 공방의 비생산성을 보면서 더욱 절감했다. 그 극복은 인권 개념의 확장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 어느 쪽도 쉽사리 외면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용하지도 못하는 독자성을

1) 싱가포르는 물론이고 그밖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도 대체로 미국의 대응에 비판적이었다. [미-싱가포르 '태형싸움'], 「미소년 '태형' 파장」, [조선일보], 1994.4.15; 5.13. [미국의 아시아정책], [한겨레신문], 1994.5.19 참조.

2) "Time to Assert American Values", New York Times, 4.1.1994.

3) 이 문장은 '인권'의 원형인 '인'과 '권'의 원형인 '권'의 원형을 가리키는 말이다.

5. 불교(전관 사기순...)
6. 사당방(서준식), 박래군, 노태훈, 신보신, 류은숙, 김재민, 강영라, 리은미, 김수경
7. 유기현(장작)
8. 천주교(오창래, 강제...)
9. 기독교(김경남, 김용현, 황필규...)
10. 기타(장소영...)

두요 동파필라 불공보인단
 1994년 1월 1일

본 단은 동파필라 불공보인단(이하 본단)을 구성하여 불교의 진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을 밝힌다. 본단은 불교의 진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을 밝힌다. 본단은 불교의 진리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임을 밝힌다.

All people, as human being, are entitled to fundamental rights respecting their human dignity and worth.

The Korea Human Rights Network (KOHARNET) believes that human kind has prospered as a result of the struggle to secure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dignity.

Korean organizations struggling to realize a just society respecting human rights formed the Korea Human Rights Network for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KONUHC). Through ths activities of KONUHC, the organizations were able to participate in an invaluable experience of solidarity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s.

The successor of KONUHC, KOHARNET has firmly denounced the various for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Because it places priority on respecting the fundamental equality of all men and women, it has carried out efforts to resist such forms of governmental oppression.

KOHARNET's own agenda concern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es active efforts to correspond with organizations to reform the legal system, compile and distribute information on human rights, educate on human rights, and establish international solidarity. Through such efforts, KOHARNET hopes to fulfill the important task which has been entrusted to us, which is to help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marginalized.

In order to do so, KOHARNET has undertaken or plans to undertake the following tasks:

I.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of human rights efforts

- A. Continuous efforts to publicize and provide legal aid for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 B. Efforts to reform the legal system and practices which violate human rights
- C. Organizing a task force to respond collectively to grave, newly arising human rights violations

장기수 합주명(53)씨 등 6명은 9일 "고문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헌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대리인인 김계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이유'에서 이들은 검찰이 고문수사관 고소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내린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인신구속에 있어 법상의 보장과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으며 고문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은 곧바로 헌법상의 고문금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시효제도는 고문범죄자를 더 이상 소추할 수 없도록 하여

고문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구호받을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고문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또, 관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한 국제협약 제7조, 전쟁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작용협약(유엔, 1968), 유럽협약 제3조, 미주인권협약 제5조 등의 국제법이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주명은 청구취지에서 "(이)청구를 계기로 고문범죄뿐 아니라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등 과거 군사독재에 의한 학살, 불법체포, 감금 등 인권침해 범죄가 공소시효제에 가로막혀 그 가해자를 방면하

고 있는 현대사를 바로잡고 이땅에 영원히 고문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추방되는 시급성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합주명씨 등 6명은 과거 유신과 5공 때 영장없이 불법체포된 것이 해는 35일부터 길게는 63일까지 불법구금 상태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고, 3년6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한 박근홍(49)씨를 제외하고는 20년에서 무기까지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지난 7월에 합주명씨 등과 함께 고문수사관을 고소한 황대권씨 등 5명에 대한 재항고건은 헌재 대검찰청에 계류중이다.

성취적 의뢰 농성 풀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광산노동자의 체포보장 등을 요구하며 삭발단식농성을 해왔던 성취적 강원도의원 등이 7일 농성을 풀었다.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지난 94년 6월 취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여권을 입수당하고 장시간 감금노동에 지친 내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요구하며 9일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항의농성을 시작하였다.

내팔인 목다지용씨 등 13명은 '수배중인 내팔인 산업연수생 13명의 처우개선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 가며 호소문을 통해 ▲기술연수 실시 ▲장시간 노동에 따른 임금저불 ▲계약이행 ▲감시감금노동철폐 등을 촉구했다.

목다지용(26)씨는 "우리는 처음에 외국까지 와서 데모할 생각은 없었다. 단지 우리를 기계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을 만났고, 이를 한국정부가 조직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경찰과 인력회사가 우리의 뒤를 쫓고 한국사회가 우리를 도망자로 부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농성하고 있는 취업연수생들, 결혼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말아달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기술을 배우러 온 노동자임을 강조했다.

명동성당 언덕방이에는 5평정도의 텐트만이 배운 바람을 막아주고 있고 주위에는 '우리는 더이상 노예가 아니다', '여권을 돌려달라', '임금을 우리 손에 직접 달라' 등의 대자보와 산재를 당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사해 기업주나 인력개발회사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코뼈가

한국인 공장장, 내팔 여성노동자 결연

한국인 공장장이 그 공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여성노동자를 폭행,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성남 팜모방기구(대표 신중협) 김현수 공장장이 8일 새벽 1시 30분경 여자기숙사에 잠입하여 내팔인 여성노동자를 폭행, 강간하였다. 7일 오후 6시 업무가 끝나고 내팔 남자 노동자들이 모두 나간 사이, 퇴근했던 김씨가 내팔 노동자로 가장하여 몰래 여자기숙사에 들어왔다. 여자기숙사의 한 외국인 여성은 피해 달아났으나 미처 도망가지 못한 채 피해자는 손을 뒤로 묶이고 얼굴을 심하게 맞았으며 목을 졸린 상태에서 강간당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불을 켜려고 스위치를 눌렀으나 어느 방에도

II. Compilation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on human rights

KOHRNET plans to establish computer and distribution networks on behalf of human rights organizations. Its activities, however, will not stop here. After analyzing and arranging the information, KOHRNET will serve as an easily accessible information bank providing information appropriate to the current human rights problems.

III.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Human rights are an issue of interest and importance not only to experts in that field, but instead should be known by all. For the thorough education and study of these issues, KOHRNET i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continuous and various methods of education.

- A. Human rights education to the general public
- B. Education and training of human rights activists
- C. Training about UN human rights bodies

IV. International solidarity activity

Human rights are not just a concern for the Korean people, but they are of universal importance and must be pursued by all of humankind. To promote values respecting universal human rights, KOHRNET has planned positive action as a step towards international solidarity.

- A. Coordinative work as a representative of the New 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NILC), an organization created after the Vienna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June '93)
- B. Member of Facilitation Team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regular activity of with UN Human Rights bodies
- C. Participation in various human rights-related conferences, and analysi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s

Korea Human Rights Network (KOHRNET)

All people as human beings are entitled to their human dignity and worth. The Korean Human Rights Network (KOHRNET) has pursued as a result of the activities of KOHRNET.

Korean organizations struggling to realize a rights formed the Korea Human Rights Network for the on Human Rights (KOHUCH). Through the activities of KOHRNET, organizations were able to participate in an inviolable-specter of solidarity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s. KOHRNET has firmly denounced the various for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Because it places priority on respecting fundamental rights of all men and women, it has carried out efforts to eliminate such forms of governmental oppression.

KOHRNET's own records concern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e active efforts in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to reform the legal system and to disseminate information on human rights, educate on human rights, and establish international solidarity. Through such efforts, KOHRNET hopes to fulfill the important task which has been entrusted to it, which is to help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all.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KOHRNET은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인권교육, 인권조사, 인권옹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인권침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KOHRNET은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인권침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KOHRNET은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인권침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KOHRNET은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협력하여 인권교육, 인권조사, 인권옹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인권침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KOHRNET은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인권침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KOHRNET은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인권침해의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사업계획서

1. 인권현안에 대한 협의

- 인권침해에 대한 공동대응 협의
-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관련 협의
- 행정법 개정운동 관련 협의

1994. 10. 6/7 부터 3일간
주제 : 한국의 주요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기구 및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실천적 전략적 접근을 위한 워크샵)
진행: IS와 인권협

2. 인권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배포

- 인권관련 정보자료의 체계화(자료실 설치, 자료색인 전산화)

3. 인권교육

- 인권관련 월례 세미나(인권활동가 대상/현 사랑방 월례강좌 계승 발전)

4. 국제인권활동

- 국제인권봉사회(IS)의 교육프로그램
- 국제인권단체와 공동행사(예/국가보안법 심포지움): 국제사면위, 아시아위치 등

5. 정기적인 유엔인권기구 상대 활동

- FACILITATION TEAM(아태인권촉진단) 활동
- NGO Interim Liaison Committee(NILC) 활동
- * 종합적인 활동계획 수립, 대유엔 활동 점검 분석
- * 실무 및 해외 협력단위 구성
- * 인권소위, 특별보고자, 실무위 등과의 정보 교환, 초청
- * 51차 인권위 준비

- 국가보안법 관련 후속사업(민변, 민주법연)

To: 노태우
From: KNCC 인권위

한국 인권단체협의회 창립대회

일시: 1994. 6. 1

장소:

사회:

* 리움 컨벤션센터
(8:15)

사제: 이문자 리움
순서

- 개회선언 → 민가형 (2부)
- 국민 의례 →
- 경과보고 → NCC
- 대회사 → 현안
- 격려사 →
- 내빈 소개 → 전국연방 상하연, 리움연방, 현우
- 국내외 축하메시지 낭독 →
- 기념강연 →
- 운영규정(안) 심의 →
- 임원 선출 →
- 사업계획(안) 심의 →
- 창립서언문 채택 →
- 폐회 →

사회자: 천기백

622-8110
8110
전국(국민연방)

2부: 기념강연 등

1부: 오제석, 노태우
2부: 비서실

이로
1부: 오제석 등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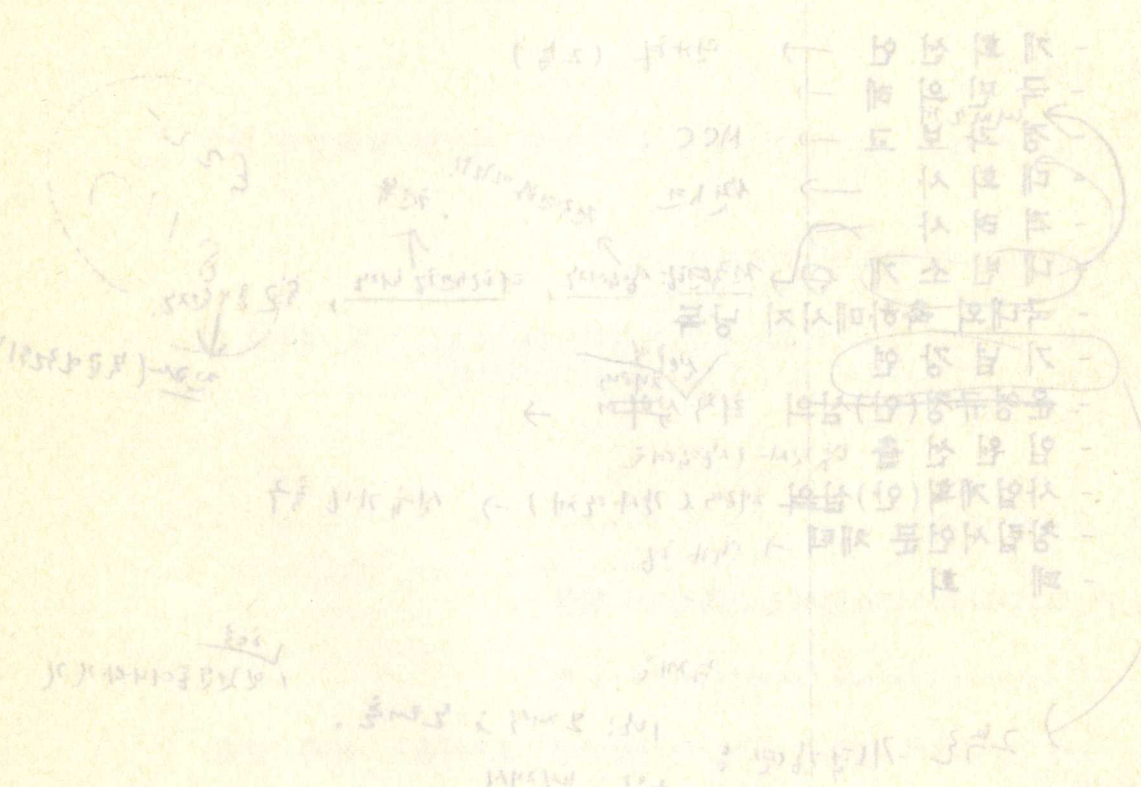
대한민국 인권단체연방위원회

1. 8. 1001 : 181
: 소장
: 이사

FOR KONG
KONG: KONG

2018 09 01-2 -40

대한민국 인권단체연방위원회



Dear Sir/Madam,

Greetings from Korea! KONUCH will bear a new name! - this is a brief explanation of KONUCH's transformation into a new organization.

The Korea NGOs' Network for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or KONUCH was formed in early 1993 by 12 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 Korea with the purpose of joint preparation and participation for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convened by the U.N. After 6 months of internal consultation since the Vienna Conference, all KONUCH member organizations agreed to transform KONUCH's temporary structure into a permanent network type along with a new name; the Korea Human Rights Network or KOHRNET in short.

In the spirit of unity and cooperation, KOHRNET will be formally inaugurated on June 2(?). KOHRNET will be a permanent network of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major human rights NGOs, thus symbolizing a significant step forward to an efficient solidarity among NGOs in Korea. It will retain most of KONUCH's membership, and will of course have some new members.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new contact address and phone number in your future communication to us. We hope the transformation of KONUCH into KOHRNET serves better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of human rights activities and wish to continue our working relationship with your organization. Thank you.

KOHRNET new address : 민변 주소, 전화, 팩스번호, 대표 이름.
KOHRNET's Members :

4가지사건 명단
연주 message